



#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

수신자 안성시 관내 기관 및 단체  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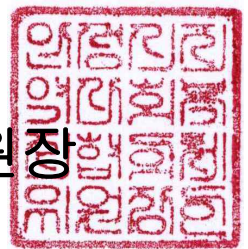
제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에 따른 후보자 모집 안내

---

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귀 기관 및 단체에서는 불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사회복지법인 이사추천이사제 도입에 따른 후보자 모집 안내 1부. 끝.

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



간사 안정연  
협조자

실무협의체 위원장 김보라

대표협의체 위원장 김경한

시행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- 63 (2013. 4. 5) 접수

우 4 5 6 - 7 0 1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시청길 25

전화 031)678-2195 / FAX 031)678-2199 / an132488@korea.kr

[별지1호]

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고 제2013 - 1호

##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(안)

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·전문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추천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과 기관·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3 년 4월 2일

###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

1. 모집기간 : 2013. 4. 2. ~ 2013 . 4. 16.(15일간)
2. 모집대상 :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
3. 신청서류
  - 지원신청서(필수)-별지 2호
  - 관련 자격증 증빙자료 (사회복지,보건의료,보육,교육,특수교육등)-소지자에 한함
  - 관련 학위 증명서 (사회복지,보건의료,보육,교육,특수교육,행정,경영등)-소지자에 한함
  -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증명서 (활동기간 명시)-소지자에 한함
  - 재직 증명서
  - 추천서(소지자 가점)-별지 3호
4. 모집인원 : 10여명(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)
5.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
  -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(별지4호)로 시설운영에 적합 한 자
  - 사회복지 분야에 경력과 자원봉사활동 및 전문성을 구비한 자
  - 현 법인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
  - 대표협의체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서면심사 결정
  - ※ 특정기관의 이력이 있을 경우 후보자를 특정기관으로 배제하여 운영
6. 모집방법 : 공개모집 및 추천(기관·단체 등)
7. 접수처 및 방법
  - 접 수 처 :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
  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FAX(031-678-2199), 이메일 an132488@korea.kr
  - ※우편 : (456-701) 안성시 봉산동 시청길 25 안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내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
8. 활동내용
  -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,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참여
9. 기타사항
  -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함
10.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문의(☎ 031-678-2195)



[별지3호]-선택사항(활동기관과 추천기관이 동일해야함)

##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 추천서

추천대상	성명		사회복지자격증	급
	주소			
	주민등록번호	-	최종학력	
	연락처			
추천기관	기관(단체)명			
	대표자성명			
	주소			
	연락처			
주요경력 및 자원봉사 활동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예시)00 범죄예방센터에서 활동(2010. 1- 2012.12)</li> <li>◦ 예시)00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(2012.5-현재까지)</li> <li>◦</li> <li>◦</li> </ul>			
추천사유				
<p>상기 추천대상을 안성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>추천기관명(대표 성명) 00범죄예방센터 및 자원봉사센터(서명 또는 직인)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귀하</p>				

[별지4호]

##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임원 결격 사유자

- 법제7조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 - 미성년자
 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-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,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를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